

〈신 설〉

〈신 설〉

제9조 ~ 제11조 (생 략)

③ 수탁자는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등을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합창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열람·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3조에 따라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제13조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종로구립합창단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합창단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종로구립 합창단 운영을 종로문화재단으로 위탁·운영함에 따라

- “운영”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의 취소” 항목 신설

조 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104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4월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의 운영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며, 시설별 휴관일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 를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을 “시설의 사용자는” 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 “있다.” 는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2” 를 “별표 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별표 3” 을 “별표 4” 로 한다.

제20조 중 “별표 4” 를 “별표 5” 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4장을 제7장으로 하고, 제23조를 제36조로 한다.

제4장(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5장(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6장(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